####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호 204

제출연월일: 2007. 8.24.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복합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능동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에 한정된 현 조례를 「노인복지법」및 「의료법」등 관련 규정에 합치되도록 일부 용어 및 인용 법조문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나.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다.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를 정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의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8. 3. ~ 2007. 8. 13.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 ·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노인전 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명 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요양병원"을 각각 "병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 제2호 및 제4호중 "치매환자"를 각각 "치매 또는 노인환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입원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 또는 노인성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1항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보호법」"으로 한다.

제12조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 명칭              | 위치                    | 비고 |
|-----------------|-----------------------|----|
| 대전광역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30-2 일원 |    |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 행   |                       | 개   | 정                                       |                                   | 안  |
|---|---|-----------------------|---|---|-----------------------------------|--|
|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마  | 요양병원설치·운  | 경 대                   | 전광역시                                      | 노인전문병                                   | 원 설치                              | 및 운영   |
| <u>조례</u>   |   | <u>조</u>              | 례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 양과 진료를 위하 135조 및 의료법 정에 의하여 대전 양병원(이하 "요양설치·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위치) 요양병원 하 "시"라 한다) 관 | 여 지방자치법 제30조제2항의 광역시립노인치매 병원"이라 한다) 필요한 사항을 나다.           | 제<br>규<br>요<br>의<br>규 | 자의 요?<br>지법」제를<br>역시 노?<br>관하여 필<br>으로 한디 | 당과 진료를<br>35조의 규정<br>1전문병원의<br>1요한 사항·  | 위하여<br>에 의하<br>설치<br>을 규정<br>배전광역 | 「노인복       여 대전광       및 운영에       함을 목적       시 노인전 |
| 제3조(업무) <u>요양병원</u>   | 은 다음 각호의  |                       |   | <u>병원</u>                               |                                   |  |
| 업무를 관장한다. 1. <u>치매환자</u> 의 외래 및 2. <u>치매환자</u> 의 임상 3. (생략) 4. 기타 <u>치매환자</u> 관한 사항                   | 및 역학적 조사연구  |                       | 2. <u>치매 5</u><br>3. (현행고                 | <br>또는 노인환<br>또는 노인환<br>가 같음)<br>개 또는 노 | <u> </u>                          |  |
| 제4조(설치·운영) ① "시장"이라 한다)은 영한다. 다만, 시장 할 때에는 다음 각 자에게 10년 이내 요양병원을 위탁·운 며, 위탁기간 만료·다.                   | 요양병원을 설치·이 필요하다고 인<br>호의 1에 해당하<br>의 기간을 정하<br>·영하게 할 수 있 | 운 -<br>정<br>는<br>여    | <br><br>                                  | <br>- <u>각 호의</u><br>                   | ·병원<br>·<br>어느<br>                | l<br><br>하나  |
| 1. ~ 2. (생략)  |   |                       | 1. ~ 2.                                   | (현행과 깉                                  | 음)                                |  |

| 현  | 행   | 개                            | 정                           | 안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u>요양병원</u> 의                                 | 2)                           |                             | - 병원                 |
|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 "수탁기관"  |                              |                             |                      |
| 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 E·감독을 받                                       |                              |                             |                      |
| 아야 한다.   |   |                              |                             |                      |
| ③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  | 해산제에 의  | ③ <u>병원</u>                  |                             |                      |
| 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현   | 한다.   |                              |                             |                      |
| ④ ~ ⑤ (생략)   |   | 4 ~ 5 (ই                     | 변행과 같음)                     | )                    |
| 제5조(의료수가) ①요양병원<br>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br>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  | 의료보호법의<br>복지부장관이                              |                              | ·) ①병원<br>                  |                      |
|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학  | 한 금액으로  |                              |                             |                      |
| 한다.  |   |                              |                             |                      |
| ② (생략)   |   | ② (현행과                       | 같음)                         |                      |
|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치면 원은 병원의 외래환자 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면 단을 받은 자로서 요양병으로부터 환자의 일상활동 기의 3군이상 이라고 판정을 한다. | 또는 보건소<br>배환자로 진<br>원의 전문의<br>자립도 수준<br>받은 자로 | 기관으로부터<br>로 진단을 보<br>요로 하는 지 | 서 치매 또는<br>난은 자로서<br>나로 한다. | - 노인성질환자<br>주로 요양을 필 |
| 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 퇴원을 결정  |                              | . – – – – –                 |                      |
| 한다.  |   |                              |                             |                      |
| 제7조(기록 정리) 요양병원어   | 서는 다음   | 제7조(기록 정                     | 리) <u>병원</u>                |                      |
|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   | 하여야 한다.                                       |                              |                             |                      |
| 1. ~ 5. (생략)   |   | 1. ~ 5. (현                   | 행과 같음)                      |                      |
| 제9조(수탁기관 의무) ① (생  |   | 제9조(수탁기관                     |                             |                      |
| ②수탁기관은 <u>요양병원</u> 의   |   |                              |                             |                      |
| 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식  |   |                              |                             | <u>병원</u>            |
| 원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 한다.   |                              |                             |                      |
| ③ (생략)   |   | ③ (현행과                       | 같음)                         |                      |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10조(보고·감독)       | ①시장은 요양병원          | 제10조(보고·      | 감독) ①    | · <u>병원</u>                             |
| 을 운영하는 수탁         | 기관 및 시설공사와         |               |          |   |
| 의료장비 구입업무         | 느 등 을 대행하는         |               |          |   |
| 자에게 필요한 사형        | 항에 대하여 보고를         |               |          |   |
| 명하거나, 관계공무        | 원으로 하여금 병          |               |          |   |
| 원의 운영상황을 정        | 상부등 기타 관계서         |               |          |   |
| 류를 조사·검사하게        | 할 수 있다.            |               |          |   |
| ② (생략)            |                    | ② (현행과        | 같음)      |   |
| 제11조(위탁의 취소)      | ) 시장은 다음 <u>각호</u> | 제11조(위탁의      | 취소)      | <u>각 호의</u>                             |
| <u>의 1</u> 에 해당하는 | 사유가 발생하였을          | <u> 어느 하나</u> |          |   |
| 때에는 그 위탁을         | 취소할 수 있다.          |               |          |   |
| 1. ~ 3. (생략)      |                    | 1. ~ 3. (ই    | 현행과 같음)  |   |
| <u>&lt;신설&gt;</u> |                    | [별표]          |          |   |
|                   |                    | 대전광역시         | 노인전문병원   | 의 명칭 및                                  |
|                   |                    | 우             | ]치(제2조 관 | 런)                                      |
|                   |                    | 명칭            |          | · 기 비고                                  |
|                   |                    |               | 한가족 대전광역 | , |
|                   |                    | 노인전문병원        | 방언당 경    | 30-2 일원                                 |
|                   |                    |               |          |   |

# 관련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시행일 2008.1.1,

- 第34條 (老人醫療福祉施設)①老人醫療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개정 1999.2.8>
  - 1. 老人療養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2. 實費老人療養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療養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3. 有料老人療養施設 : 老人을 入所시켜 給食·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 4. 老人專門療養施設: 치매·中風 등 重症의 疾患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5. 有料老人專門療養施設 : 치매·中風 등 重症의 疾患老人을 入所시켜 給食·療養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施設
  - 6. 老人專門病院 : 주로 老人을 대상으로 醫療를 행하는 施設
  - ②老人醫療福祉施設의 入所對象·入所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第35條(老人醫療福祉施設의 設置)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醫療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老人專門病院은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있는 者(齒科醫師 및 助産師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③老人醫療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 및 設

置許可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老人專門病院의 施設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의 施設 등의 기준에 관한 規定중 療養病院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되, 保健福祉部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7.4.11>

④老人專門病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醫療法의規定을 準用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醫療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중 療養病院으로 본다.<개정 1999.2.8>

- 第29條 (치매관리사업)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業務內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 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5.8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노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2.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 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중 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 6. 노인전문병원
  -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나. 임종을 앞둔 환자
  -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

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0>

-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미만) 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1조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개정 2006.10.20>)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20>

-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5. 재택치매관리사업
-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 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 의료법

####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 기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 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⑦"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3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5.2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 제28조의4 (요양병원의 운영)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 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4.10, 1982.12.31, 2000.10.21, 2003.10.1, 2007.1.26>
  -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수 있다.
  -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 ·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 사 보 고 서

2007. 9. 7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24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9. 7)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응)

# 1. 제안이유

치매환자에 한정된 현 조례 내용을 「노인복지법」및「의료법」 등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용어 및 인용 법조문을 보 완·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나.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다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를 정함(안 제3조).

####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복합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시행예정으로 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치매에 한정된 현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였으며,
- 제1조는 조례의 인용법명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제2조는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는 일부용어를 관련법과 맞게 정비하였음.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치매, 중풍, 퇴행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진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인복지법」제29조에 의한 치매연구 및관리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질환인 치매환자 만을 진료・요양토록 규정한 사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과 노인병의 특성상 복합질환자의 진료 요양수요가 증가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IV. **질 의 요 지**: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